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긴급응급조치 취소 및 잠정조치 변경 등 통지 〉
■ 전진숙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4465호)

2026. 9.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윤 상 열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개정안의 내용	2
2. 검토의견	7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전진속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2025. 11. 21.
3. 회 부 일: 2025. 11. 2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를 규정하고 있고, 이들 조치의 상대방의 절차적 권리구제 수단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조치의 상대방, 즉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가 변경 또는 취소되는 경우 피해자에 대한 통지 규정이 미비하여 피해자 보호에 사각이 존재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긴급응급조치가 사후승인을 받지 못하여 취소되는 경우, 구치소 등에 유치되었다가 석방된 경우,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불송치하는 경우, 검사가 불기소결정을 하는 경우 및 잠정조치를 받은 스토킹행위자가 법원에 항고를 제기하여 법원이 잠정조치를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등에는 관련 기관에서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그 취지와 내용 등을 통지하도록 하여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III. 검토의견

1.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 제6조제1항 후단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 제5조제4항¹⁾에 따라 검사가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사후승인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지방법원 판사가 사후승인을 하지 아니하여 사법경찰관이 긴급응급조치를 취소한 경우, 이를 사법경찰관이 스톱킹행위의 상대방등이나 그 법정대리인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임(안 제6조제1항 후단 신설).
- 또한 사법경찰관이 통지를 함에 있어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여 전자문서의 형태로 통지할 수 있도록 하고, 통지의 방법, 절차 및 전자적 방법에 의한 통지의 요건과 방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6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의 장은 「스토킹처벌법」 제9조제1항제4호²⁾에 따른 잠정조치 대상인 스톱킹 행위자가 석방되는

1)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긴급응급조치의 승인 신청) ① 사법경찰관은 긴급응급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해당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사후승인을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검사는 긴급응급조치가 있었던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지방법원 판사에게 해당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사후승인을 청구한다. 이 경우 제4조제2항에 따라 작성된 긴급응급조치결정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지방법원 판사는 스톱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청구된 긴급응급조치를 승인할 수 있다.

④ 사법경찰관은 검사가 제2항에 따라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사후승인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지방법원 판사가 제2항의 청구에 대하여 사후승인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그 긴급응급조치를 취소하여야 한다.

⑤ 긴급응급조치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때에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10조제6항 신설).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6³⁾에 따라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통지와 「형사소송법」 제258조⁴⁾에 따
라 검사가 불기소결정을 하는 경우에 대한 통지에서, 효력이 상실
되는 잠정조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통지서에 그 사실을 기재하도
록 규정함(안 제11조제6항 신설).

□ 항고법원이 원결정을 취소하거나 원결정을 파기하고 스스로 적절
한 잠정조치 결정을 하는 경우 잠정조치 결정의 취소 또는 변경에
대하여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안 제
14조의2 신설), 이를 재항고 규정에도 준용함(안 제15조제2항).

2)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 ① 법원은 스톱킹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
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스톱킹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잠정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피해자에 대한 스톱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2.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 3의2.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장치”라 한
다)의 부착
4.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3) 「형사소송법」

제245조의6(고소인등에 대한 송부통지) 사법경찰관은 제245조의5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그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등에게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
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불송치 등의 결정서와 제245조의7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안내 및 서식을 함께 보내야 한다. <개정 2026. 8. 4.>

4) 「형사소송법」

제258조(고소인등에의 처분고지) ①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있는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
기하지 아니하는 처분, 공소의 취소 또는 제256조의 송치를 한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검사는 불기소 또는 제256조의 처분을 한 때에는 피의자에게 즉시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현행	개정안
제6조(긴급응급조치의 통지 등) ① 사법경찰관은 긴급응급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스토킹행위의 상대방등이나 그 법정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u><후단 신설></u> ② (생략) <u><신설></u> <u><신설></u> 제10조(잠정조치의 집행 등) ① ~ ⑤ (생략)	제6조(긴급응급조치의 통지 등) ① ----- ----- ----- ----- <u>제5조제4항에 따라 취소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u> ② (현행과 같음) ③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함에 있어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여 전자문서의 형태로 통지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통지의 방법, 절차 및 전자적 방법에 의한 통지의 요건과 방식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잠정조치의 집행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u><신설></u>	⑥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잠정조치 결정을 집행하는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의 장은 스토킹행위자가 석방되는 때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11조(잠정조치의 변경 등) ① ~ ⑤ (생략) <u><신설></u>	제11조(잠정조치의 변경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사법경찰관이 「형사소송법」 제245조의6에 따라 통지를 하는 경우 또는 검사가 같은 법 제258조에 따라 통지를 하는 경우 제5항에 따라 효력을 상실하는 잠정조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통지서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u><신설></u>	제14조의2(항고에 따른 통지) 항고법원은 제14조제2항에 따라 원결정을 취소하거나 원결정을 파기하고 스스로 적절한 잠정조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잠정조치 결정의 취소 또는 변경에 대하여 피해자 또는 그 법

현행	개정안
제15조(재항고)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재항고의 기간, 재항고장의 제출 및 재항고의 재판에 관하여는 제12조제2항, <u>제13조 및 제14조</u> 를 준용한다.	<u>정대리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u> 제15조(재항고)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u>제13조, 제14조 및 제14조</u> <u>의2</u> ----.

2. 검토의견

□ 현행 「스토킹처벌법」은 긴급응급조치 또는 잠정조치의 취소·변경 등이 이루어진 경우 피해자 등에 대한 통지제도를 두고 있으나, 이는 이미 승인된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를 취소·변경 및 연장하는 경우 통지하는 제도임.

○ 현행 「스토킹처벌법」 제7조제5항은 사법경찰관이 직권으로 긴급응급조치를 취소하거나 지방법원 판사의 승인을 받아 긴급응급조치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 스톱킹 행위를 당한 상대방, 그의 동거인, 가족 또는 그 법정대리인과 긴급응급조치의 대상자에게 취소 또는 변경의 취지, 내용 및 불복방법 등을 사법경찰관이 통지 또는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⁵⁾

○ 또한 동법 제11조제4항은 법원이 잠정조치의 취소, 기간의 연장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하였을 때에는 검사와 피해자 및 스톱킹 행위자 등에게 취소, 연장 또는 변경의 취지, 내용 및 불복방법

5)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긴급응급조치의 변경 등) ① 긴급응급조치대상자나 그 법정대리인은 긴급응급조치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사법경찰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③ (생략)

④ 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청에 의하여 해당 긴급응급조치를 취소할 수 있고, 지방법원 판사의 승인을 받아 긴급응급조치의 종류를 변경할 수 있다.

⑤ 사법경찰관은 제4항에 따라 긴급응급조치를 취소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스톱킹 행위의 상대방등 및 긴급응급조치대상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통지 또는 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3. 7. 11.>

1. 스톱킹 행위의 상대방등이나 그 법정대리인: 취소 또는 변경의 취지 통지

2. 긴급응급조치대상자: 취소 또는 변경된 조치의 내용 및 불복방법 등 고지

⑥ (생략)

등을 고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⁶⁾

□ 개정안 중 ①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사후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아 해당 조치가 취소되는 경우(안 제6조제1항 후단), ②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된 스토킹행위자가 석방되는 경우(안 제10조제6항), ③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 및 검사의 불기소 결정에 효력이 상실되는 잠정조치 결정이 있는 경우(안 제11조제6항)는 현행법의 통지제도가 포섭하지 못하는 부분이라는 점에서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 다만, ④ 잠정조치를 받은 스토킹행위자가 법원에 항고를 제기하여 항고법원이 잠정조치를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안 제14조의2)에 대한 통지는 현행법 제11조제4항과 일부 중복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심사 시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6)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잠정조치의 변경 등) ① 스토킹행위자나 그 법정대리인은 잠정조치 결정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② 검사는 수사 또는 공판과정에서 잠정조치가 계속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이나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해당 잠정조치기간의 연장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고, 잠정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이나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해당 잠정조치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1.>

③ 법원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제1항의 신청이나 제2항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해당 잠정조치의 취소, 기간의 연장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할 수 있다.

④ 법원은 제3항에 따라 잠정조치의 취소, 기간의 연장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하였을 때에는 검사와 피해자 및 스토킹행위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통지 또는 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3. 7. 11.>

1. 검사,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 그 법정대리인: 취소, 연장 또는 변경의 취지 통지

2. 스토킹행위자: 취소, 연장 또는 변경된 조치의 내용 및 불복방법 등 고지

3. 제9조제6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잠정조치를 한 사실

⑤ 잠정조치 결정(제3항에 따라 잠정조치기간을 연장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하는 결정을 포함한다. 이하 제12조 및 제14조에서 같다)은 스토킹행위자에 대해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한 때 또는 사법경찰관이 불송치결정을 한 때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개정 2023. 7. 11.>

- 법원행정처는 안 제14조의2의 경우, 통지가 필요한 내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⁷⁾ 기존 조문(법 제7조제5항, 제11조제4항) 형식과 정합적이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⁸⁾ **보완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경찰청은 안 제6조제3항 및 제4항에 대하여 수사업무를 하는 데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령(경찰수사규칙) 및 경찰청 훈령(범죄수사규칙)에 규정하고 있어, 개정안과 같이 법무부 소관 하위법령에 세부절차를 위임하는 것은 기관 간 권한과 책임이 불일치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신중검토**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070

7) 안 제14조의2는 ‘잠정조치 결정의 취소 또는 변경’에 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잠정조치 종류의 변경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그 기간의 연장도 포함하는 개념인지 불명확하다는 입장임.

8) 기존 조문에서는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의 취소·연장·변경이 있는 경우 결정의 ‘취지를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안 제14조의2는 ‘결정의 취소 또는 변경’에 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